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결(약) 제2017 - 095 호 2017. 9. 12.

사 건 번호 2016가맹2557

사 건 명 (주)빌리엔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빌리엔젤 경기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7, 두림빌딩 4층(당정동)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2017. 8. 17.

주 문

-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 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 하고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1., 2.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빌리엔젤'을 사용하여 제과 점업을 운영¹⁾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3호, 2012. 2. 17.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설립일	매출액			직영점/	성조	상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맹점수	업종	종업원 수
2	2012.6.13.	1,300,205	3,857,748	6,900,839	12,482,957	25 / 31	제과점업	128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¹⁾ 피심인이 운영하는 빌리엔젤의 업종은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디저트 카페이다.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u>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u>

(단위: 개)

구 분2)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맹본부 수	2,405	2,678	2,973	3,482	3,910
영업표지 수	2,947	3,311	3,691	4,288	4,844
가맹점 수	170,926	176,788	190,730	194,199	208,104
직영점 수	10,155	11,326	12,619	12,869	15,459

<표 3> <u>가맹본부·가맹점 수 변동추이</u>

(단위: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외식업	2,089 (70.3%)	2,521 (72.4%)	2,865 (73.3%)	
가맹본부 수	서비스업	601 (20.2%)	648 (18.6%)	691 (17.7%)	
기정근무 무	도·소매업	283 (9.5%)	313 (9.0%)	354 (9.0%)	
	전체	2,973 (100%)	3,482 (100%)	3,910 (100%)	
	외식업	2,623 (71.1%)	3,142 (73.2%)	3,587 (74.0%)	
영업표지 수	서비스업	743 (20.1%)	793 (18.6%)	862 (17.8%)	
	도·소매업	325 (8.8%)	353 (8.2%)	395 (8.2%)	
	전체	3,691 (100%)	4,288 (100%)	4,844 (100%)	
	외식업	84,046 (44.1%)	88,953 (45.8%)	99,544 (47.8%)	
가맹점 수	서비스업	65,107 (34.1%)	61,374 (31.6%)	62,134 (29.9%)	
173省十	도·소매업	41,577 (21.8%)	43,872 (22.6%)	46,426 (22.3%)	
	전체	190,730 (100%)	194,199 (100%)	208,104 (100%)	
	외식업	3,959 (31.4%)	4,432 (34.4%)	5,131 (33.2%)	
직영점 수	서비스업	3,006 (23.8%)	2,534 (19.7%)	3,194 (20.6%)	
	도·소매업	5,654 (44.8%)	5,903 (45.9%)	7,134 (46.2%)	
	전체	12,619 (100%)	12,869 (100%)	15,459 (100%)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²⁾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이다. 예를 들면, 2015년도 가맹점 수 208,104개는 2015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3,910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2014년 말 기준 가맹점 수를 말한다.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전**(******점 대표) 등 5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58,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법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표 4>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번	가맹점명	계약체결자	예치가맹금 수령일	예치가맹금 수령액
1			2013-01-24	5,000
2			2014-11-18	16,000
3			2015-03-23	5,000
4			2015-04-09	16,000
5			2015-10-03	16,000
	58,000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2013. 1. 24. ~ 2013. 7. 15. 기간 동안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점 대표) 등 2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전**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3)

8.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인 2016. 1. 28. ~ 2016. 2. 5. 기간 동안에는 김**(*******점 대표)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김 **과는 가맹계약도 체결하였다.

9. 그리고 피심인은 2014. 4. 4. ~ 2016. 7. 13. 기간 동안 조**(***점 대표) 등 2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고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4)

³⁾ 피심인은 2013. 8.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는 2014. 2. 14.부터 시행되었는바,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표 5>의 가맹점사업자 중 2014. 2. 14.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전**(******점), 김**(******점)은 제외한다.

가맹계약 체결내역

연번	가맹점명	계약 체결자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금 수령일	정보공개서 제공여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1			2013-01-24	2013-01-24	미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법시행전)
2			2013-07-15	미수령	미제공	미제공 (법시행전)
3			2014-04-04	2014-05-02	제공 (2014-03-01)	미제공
4			2014-04-17	2014-04-17	제공 (2014-03-16)	미제공
5			2014-06-02	2014-06-11	제공 (2014-05-01)	미제공
6			2014-08-06	2014-10-15	제공 (2014-07-01)	미제공
7			2014-11-18	2014-11-18	제공 (2014-10-17)	미제공
8			2015-02-04	2015-02-05	제공 (2015-01-01)	미제공
9			2015-02-10	2015-02-11	제공 (2015-01-13)	미제공
10			2015-03-12	2015-03-23	제공 (2015-02-25)	미제공
11			2015-09-02	2015-09-03	제공 (2015-08-18)	미제공
12			2015-10-03	2015-10-03	제공 (2015-09-13)	미제공
13			2015-10-07	2015-10-16	제공 (2015-06-05)	미제공
14			2015-11-04	2015-11-05	제공 (2015-06-05)	미제공
15			2016-01-18	2016-02-15	제공 (2015-06-05)	미제공
16			2016-01-28 (기한전체결)	2016-01-28 (기한전수령)	제공 (2016-01-15)	제공 (2016-01-15)
17			2016-02-16	2016-02-17	제공 (2015-01-20)	미제공
18			2016-02-16	2016-02-16	제공 (2015-01-20)	미제공
19			2016-04-26	2016-04-26	제공 (2015-01-20)	미제공
20			2016-05-30	2016-05-30	제공 (2016-05-15)	미제공

21		2016-07-11	2016-07-05	제공 (2016-06-20)	미제공
22		2016-07-13	2016-02-05 (기한전수령)	제공 (2016-02-05)	미제공

- * 주」피심인은 김**(*********점 대표)이 빌리엔젤 가맹계약과 관련한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 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함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5)),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 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⁵⁾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한다.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75호, 2012. 5. 7.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⁶⁾ 피심인의 가맹비는 가입비, 최초 교육훈련비, 기술 및 경영지원비, 개설지원비, 매뉴얼 및 자료제공비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맹금 58,0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여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므로⁷⁾, 피심인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7. 6.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 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⁷⁾ 피심인도 자신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58,000천 원이 법상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7년 9월 12일

의 장 위 원 곽 세 붕

위 원 김 성 하

위 원 채 규 하

교육명령

- 1. 교육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 2. 교육시간 : 1인당 3시간
- 3. 교육이수대상자 :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직원 1명 및 책임 임원 1명)
- 4. 교육내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 * 교육자료 작성 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
- 5. 교육이수기관 : ㅇㅇㅇ, 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6. 평 가 :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 7. 교 육 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 8. 이행절차
 -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 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마쳐야 함
 -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 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 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